-「장애인주간보호시설 '양천희망돌봄센터' 운영」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제2735호

2022. 03. 23.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22. 03. 11. 양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2. 03. 11. 복지건설위원회

다. 상정일자 : 제29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
2022. 03. 23.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주민복지국장)

가. 제안이유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에 따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 '양천희망돌봄센터'를 설치하고,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함.

○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위탁사무명 :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양천희망돌봄센터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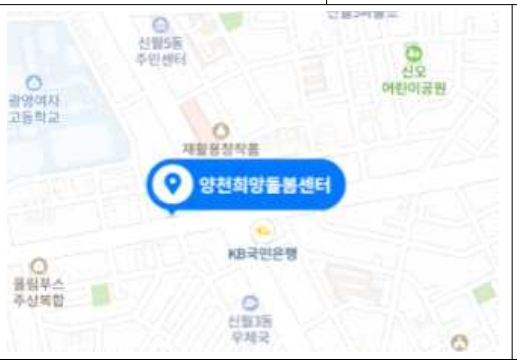
○ 추진 필요성

- 구 직영 운영 중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 전문성 제고
-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여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 도모

○ 민간위탁 사무내용

-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양천희망돌봄센터 운영 전반
- 이용 장애인 보호·교육·관리, 시설 방역·안전 관리 및 보조금 등 회계 운영

○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

구 분		내용	비고
위 치		가로공원로 101, 2층	신월누리복지센터
공간구성	사무실, 거실, 조리실	180.27㎡	
운영인력	**계**	**3명 이상**	주간보호시설 최소인력기준
	센터장	1명	
	사회재활교사	2명 이상	
이용인원	성인중증장애인	10명 이상	서울시 보조금 지원기준
소요예산	**계**	**연 189,343천원**	시비 지원 전까지 법인 자부담으로 운영
	운영비	40,000천원	
	인건비	149,343천원	
위치도 및 전경			

○ 민간위탁 기간 : 5년(2022. 5. ~ 2027. 4.)

○ 민간위탁 소요예산 : 189,343천원(2023년)

○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: 적정

- 2022년 제2차 위원회 심의결과 통보, 기획예산과-2615(2022.3.2.)

○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'수탁기관 선정위원회' 심사선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

○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

○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 및 제21조의2

○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

4. 검토의견 (전문위원 신훈)

가. 동의안 제출 배경

○ 본 동의안은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『양천희망돌봄센터』의 시설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하는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사업의 안정성·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사업 운영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.

나. 동의안 내용 및 법적 요건 검토

1) 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추진배경에 대한 검토

○ 2019년 12월 개관한『양천희망돌봄센터』는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0월(5년)까지 사단법인 하울회가 수탁 받아 운영할 계획이었음.

- 하지만 2021년 3월, 하울회 위탁기간(2019년 12월 ~ 2021년 3월)동안 최초 위탁 계약 시 약정금액이었던 600만원보다 많은 법인자부담 1억 4,031만원(법인전입금 1억630만원, 이용료수입 3,401만원)이 발생함에 따라 법인의 재정악화로 시설운영이 불가하여 수탁을 자진 반납함.
- 이는, 2020년 서울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공모사업 선정 예정이었으나,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 팬데믹으로 공모예산이 취소되었고, 이후 2021년에는 공모사업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것에

기인함.

- 이에 따라 양천희망돌봄센터는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양천구 직영체제로 운영 중에 있음.

○ 양천희망돌봄센터는 양천구 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6곳 중 유일한 구 직영시설로서, 구 직영으로 운영 시 ① 시비 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대상에 해당(법인 및 개인 운영시설 대상)하지 않게 되며, 이에 따라 ② 지속적으로 구비가 지출될 수 밖에 없음.

- 따라서, 시비보조금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탁운영을 실시하여야 함. 그 후 공모를 통해 대상 시설로 선정되어야 구비를 절감할 수 있음.
- 참고로, 서울시내 시비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시설은 양천구를 포함해 4곳임.

【표 1】서울시 보조금 미지원 시설 현황

연번	자치구	시설명	운영방식	이용정원	설치일
1	양천구	양천희망돌봄센터	구 직영	10	19.12.18.
2	금천구	금천발달장애인주간보호		15	20.11.01.
3	관악구	관악밀알주간보호	민간위탁	10	19.04.12.
4	은평구	은평장애인주간보호		15	21.01.20.

2)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

○ 양천희망돌봄센터는「장애인복지법」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,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[별표 4] 제2호제다목에 따라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임.

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제라목에 따라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며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따라서, 양천희망돌봄센터를 민간위탁하려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음.

- 또한,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려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.

3) 동의안 요건 및 소요예산에 대한 검토

○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4항에 따르면, 민간위탁 동의 및 보고를 위해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에는 ① 민간위탁 사무명, ②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, ③ 민간위탁 사무내용, ④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 등 개요, ⑤ 민간위탁 기간, ⑥ 민간위탁 소요예산, ⑦ 수탁자 선정방식, ⑧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가 포함되어야 함. 제출된 동의안은 규정된 모든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별 문제가 없음.

○ 양천희망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구비는 2021년 1억 2,226만 3천원, 2022년 1억 7,656만 1천원(예상), 2023년 1억 5,934만 3천원(예상)임.

- 매년 인건비 인상률 및 호봉 상승에 따라 인건비는 증가하겠으나, 민간위탁 시 수입금이 법인 수입으로 산정되어 운영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【표 2】연도별 양천희망돌봄센터 민간위탁 (예상) 사업비

기간		총 비용	구비	자부담	예산과목	세부 산출내역
연	월					
2021년	계	150,094	122,263	27,831		
	1~3월	27,831	0	27,831	법인전입금 및 수입	인건비 22,568 운영비 5,263
	4~12월	122,263	122,263	0	인건비	97,864
					운영비	24,399
2022년 (예상)	계	194,061	176,561	17,500		
	1~5월	73,785	73,785	0	인건비	57,580
					운영비	16,205
	6월~12월	120,276	102,776	17,500	민간위탁금	인건비 80,091 운영비 40,185
2023년 (예상)	계	189,343	159,343	30,000		
	1월~12월	189,343	159,343	30,000	민간위탁금	인건비 149,343 운영비 40,000

다. 종합의견

○ 본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민간위탁 취지 및 필요성은 적절하며, 법적 요건과 동의안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.

- 다만, 서울시 보조금 공모에 선정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비보조금 공모사업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6. 토론요지 : 생 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의원 8명, 출석의원 5명 만장일치 의결)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